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85
----------	-------

발의연월일 : 2026. 4. 13.

발 의 자 : 조지연 · 박준태 · 이인선
강승규 · 안철수 · 김용태
김소희 · 김정재 · 조은희
김기웅 · 이종배 · 서일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 특정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지출에 대하여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전통시장 육성, 대중교통 이용, 문화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소비자의 해당 분야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녹색제품과 같이 제품 사용 전주기에 걸쳐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의 구매 비용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녹색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설비 개선 및 시설 투자를 위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녹색제품(중간재)을 사용하여 완제품을 제작하려는 기업과 녹색제품(완제품)의 구매를 원하는 소

비자의 비용 부담을 가중하여 녹색제품 시장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바, 녹색제품 구매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이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과 구매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여 주고, 녹색제품을 최종 소비하기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도 소득공제하여 줌으로써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5조의9 및 제126조의2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4)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5)(중전의 4)) 중 “1)부터 3)까지”를 “1)부터 4)까지”로 한다.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각 호의 녹색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녹색제품생산시설”이라 한다) 및 해당 녹색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녹색제품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2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9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6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100분의 3

제24조제1항제3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가목1)부터 3)까지”를 “가목1)부터 4)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녹색제품생산시설 및 녹색제품연구개발시설”로 한다.

4)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3)에 따른 금액

라) 녹색제품생산시설 및 녹색제품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호

가목4)에 따른 금액

제25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9(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각 호의 녹색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구매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4, 중소기업은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녹색제품 구매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 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제2항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8, 제25조의9”로 한다.

제1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호까지”를 “제6호까지”로,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를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및 문화체

육사용분”을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문화체육사용분 및 녹색제품구매분”으로,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을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및 녹색제품구매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대중교통이용분”을 “대중교통이용분, 녹색제품구매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나목 중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및 녹색제품구매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및 녹색제품사용분”으로 하며, 같은 목 1) 중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을 “직불카드등사용분 + 녹색제품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을 “직불카드등사용분 - 녹색제품구매분 - 문화체육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을 “(직불카드등사용분 + 녹색제품구매분) × 100분의 30”으로,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을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녹색제품구매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제1호 중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제7호”를 “제2항제8호”로 한다.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녹색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녹색제품구매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8, 제25조의9”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8, 제25조의9”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25조의8까지”를 “제25조의9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8, 제25조의9”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25조의8까지”를 “제25조의9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의8까지”를 “제25조의9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2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제3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녹색제품을 구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1) ~ 3) (생략)

<신설>

2. -----

가. -----

1) ~ 3) (현행과 같음)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각 호의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녹색제품생산시설”이라 한다) 및 해당 녹색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녹색제품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2

4) 1)부터 3)까지 외의 자
산에 투자하는 경우
가) ~ 라) (생략)

나. (생략)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 3) (생략)

<신설>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
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로서 최
초로 중소기업에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
터 3년 이내에 끝나
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9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중견기업의 경
우: 100분의 6

라) 가)부터 다)까지 외
의 경우: 100분의 3

5) 1)부터 4)까지-----

가) ~ 라) (현행과 같
음)

나. (현행과 같음)

3. -----

가. -----

1) ~ 3) (현행과 같음)

4) 2026년 12월 31일이 속

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⑥ (생략)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략)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1. ~ 3. (생략)

<신설>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6호까지-----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
제8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

1. ~ 3. (현행과 같음)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및 문화체육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사용분

법률」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녹색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녹색제품구매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5. -----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문화체육사용분 및 녹색제품구매분-----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및 녹색제품구매분-----

6. -----
-----대중교통이용분, 녹색제품구매분-----

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
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
5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2023년 1월 1일부
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
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은 별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
으로 한다.

가. (생략)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
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
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
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
체육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
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
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
분의 30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

7. -----

가. (현행과 같음)

나. -----
-----신용카드
-----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및 녹색제품구매분-----

다. -----신용카드
-----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⑪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제10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2. 제2항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생략)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

⑪ -----

1.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2. 제2항제8호-----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3,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3제2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생략)

③·④ (생략)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1. 2. (현행과 같음)

3. -----

-----제25조의8, 제25조의9-----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

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